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의 실효성 제고방안

김 성 주 (연구원)

KRILA FOCUS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의 실효성 제고방안

김 성 주 (연구원)

I. 문제제기

- 최근 몇 년간 국가적으로는 여러 경제지표들이 좋지 않고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외부요인과 더불어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은 국제행사 유치, 경전철 사업, 관광사업 등으로 인해 지방 재정건전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공단 등이 추진하는 공공투자사업은 매년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으나, 공공투자사업의 투자결정체계에 대한 합리성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계속 지적되어오고 있는 부분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부처 국고보조금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각종 사업들을 유치하려 하나, 이러한 지방투자사업들은 지방비를 매칭해야 하므로 지자체 장기발전계획이나 지방 재정중기계획 등과 무관하게 추진할 경우 중도포기, 사업지연 등으로 인해 큰 매몰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지방재정을 극도로 악화시킬 수 있음
 - 특히 각종 체육회관, 문화회관, 청사 등 건축사업은 국고보조율에 부지매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지방비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음
- 중앙정부의 경우는 이러한 투자사업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999년 이후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비와 국고가 투입될 경우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시행령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¹⁾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즉, 예산의 효율적 지출을 위해 독립된 기관에서 일관되고 계량화 된 조사방법으로 타당성 분석을 시행하고 있음

1) 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 및 국가재정법시행령에 '예비타당성조사'로 되어 있고, 지방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타당성조사'로 명기되어 있음. 따라서 본 고에서도 국가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는 타당성조사로 통일함

II. 적정 공공투자과 투융자심사제도

- 반면 지방투자사업은 300억원 이상의 사업비에 대한 중앙투자심사의 경우 매년 약 300여 건의 사업들을 단기에 심의해야 하고, 500억원 이상의 사업이 첨부해야 하는 타당성조사 보고서의 경우도 조사기관의 독립성, 진행과정 및 지표의 일관성, 결과의 신뢰성 등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지방의 자체 및 시·도 투자심사의 경우도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과 전문성의 한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임
- 따라서 지방투자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사업의 투자가치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며 특히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시 타당성조사 보고서 첨부사업은 그 사업규모와 사업 종료 후 지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철저한 사전 타당성 분석에 따른 사업추진이 반드시 필요할 것임
- 본 고에서는 지방투자사업의 투자심사 전반에 대해서 언급하되, 특히 중앙투자심사 이전 타당성조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미 안정화 단계에 있는 각 부처에 대한 중앙정부 투자사업 심사의 추진체계와 비교하면서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II. 적정 공공투자과 투융자심사제도

1. 적정 공공투자 규모 및 타당성 평가

- 19세기 이후 유럽 여러 나라, 미국, 일본 등지에서 정부부문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현대 경제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일찍이 바그너(A. Wager)는 정부지출의 지속적 증가현상은 정부의 활동반경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음. 즉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려고 점차 개입의 범위를 넓혀 온 결과 정부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는 것임(이준구, 2007)
- 정부의 역할과 지출의 증가현상에 따라 국가나 지방에서 공공투자의 과부족 여부를 판단하고 적정수준의 공공투자를 도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에서 오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음
- 민간투자와 균형을 이루는 적정 공공투자 수준에 대한 많은 이론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공공투자 결정에는 많은 제약요소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이러한 공공투자의 규모론에 대해서는 변창흠·송우경(2001)에 잘 정리되어 있으며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음

가. 경제발전단계별 공공투자 규모론

- 공공투자를 경제발전이나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시각은 케인즈 이후 수 많은 학자들
에게서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투자의 규모는 지역발전이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됨
 - Hirschman(1958): 공공투자를 다른 산업에 투자기회를 창출해 주는 역할로서 이해하고 민간
자본에 비해 과도한 공공자본의 투자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
 - Hansen(1965): 지역별로 차별화 된 공공투자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지역개발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
- 반면, Musgrave, Maslow의 인간욕구 발전단계별 투자지출의 성격 변화를 논의한 Thurmond
등은 경제발전의 단계별로 투자지출의 유형이 달라진다고 주장. 이들의 논의를 종합하면, 도시의
발전단계에 따라 투자지출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정규모의 공공투자는 절대적인 수준
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도시가 처한 경제적 여건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음

나. 공공투자 부족 판단 지표

- 어떤 지역이나 공공시설에 추가적인 공공투자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네가지
방법이 있음(Gramlich, 1993, 변창흠·송우경(2001) 재인용)
 - 첫째, 공공시설에 대한 공학적 평가
 - 둘째, 채권투표 결과에 기반한 정치적 측정
 - 셋째, 수익률을 이용한 경제학적 측정
 - 넷째, 생산성 효과를 추정하는 계량경제학적 측정
- 이 네가지 방식은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와 한 국가나 도시의 전체사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가 혼재되어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두가지 유형의 네가지 평가방식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공공투자 소요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시장의 왜곡, 정치적인
판단, 공간적인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게 될 것임

다. 공공투자사업 타당성 평가

- 정부가 벌이는 각종 공공사업은 그것의 경제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실행에 옮기는
것이 타당함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는 부족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해당 사업이 사회
경제적으로 얼마나 가치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과정임

II. 적정 공공투자과 투융자심사제도

- 타당성 평가에는 재무적 타당성 평가와 경제적 타당성 평가가 있음(김강수, 2012)
 - 재무적 타당성 평가는 사회 전체의 입장이 아닌 개별 기업체의 입장에서 실제의 금전적 비용과 수입(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수익성을 통해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함.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 흐름과 이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함
 - 반면 경제적 타당성 평가는 공공투자사업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으로써 민간부문이 이윤만을 추구하는 반면 수익 외에 국민의 편익과 사회경제적인 효과, 지역균형 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재무적 타당성 평가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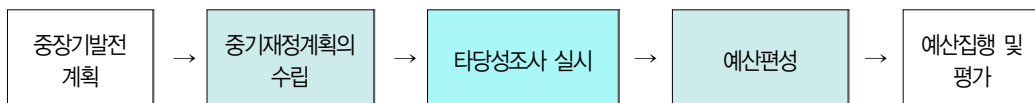
〈표 1〉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교

구분	경제적 타당성 평가	재무적 타당성 평가
평가관점	사회경제적 관점 국민 경제적 관점	개별 사업주체의 관점
평가항목	편익: 사업의 국민생산에 대한 공헌(기회)비용: 실물 자원의 투입	현금흐름
세금, 이자비용 등 이전비용	제외	포함
적용 할인율	사회적 할인율	재무적 할인율(시장 이자율)

출처: 김강수,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 KDI, 2012.

- 현재 공공투자사업의 추진과정은 중장기 발전계획-중기재정계획-타당성 조사-예산편성-집행 및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됨.
 - 여기에서 타당성 조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본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과정을 포함할 수 있음. 공공투자결정과정은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광의의 공공투자결정과정은 장기 발전계획, 중기재정계획, 타당성조사, 예산편성 과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하지만, 협의의 투자결정과정은 타당성 조사단계만이 해당됨(변창흠, 2004)

〈그림 1〉 공공투자사업 추진과정



2.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

- 공공투자사업의 특징은 사업규모와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크며, 사업의 효과에 대한 측정이 어려움
-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는 지방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1991년 6월 “지방사업투자심사규정”이 제정되면서 제도화되었으며, 1992년 지방사업투자심사지침이 처음으로 지자체에 시달되었음
- 1993년 8월에는 좀 더 체계화 된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이 마련되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투자심사규정을 마련하여 투융자사업 심사를 실시하고 있음(윤영진, 2002)
- 1994년에는 지방재정법에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 심사분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음
- 최근까지 개정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 관련 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지방재정법
 - 제31조(분야별 자문회의의 설치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 자문회의를 두며, 분야별 자문회의는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②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를 두며,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자문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에 지방재정 관련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에 회부할 수 있음
 - 제36조(예산의 편성)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함
 - 제37조(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시행령
 - 제41조(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²⁾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2) 자세한 내용은 후술할 것임

II. 적정 공공투자과 투융자심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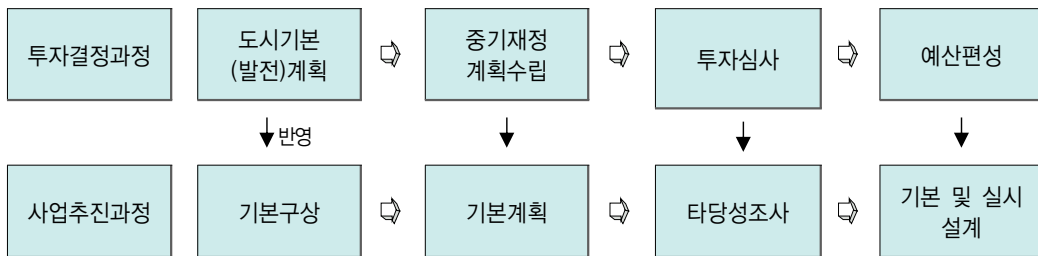
하여야 함.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함

- 제44조(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①제4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둔
②투자심사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3.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 타당성 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결정과정과 사업추진과정에서 타당성조사의 위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당성 조사는 투자결정과정에서는 투자심사의 참고자료로서 사업에 대한 투자결정을 지원하며, 사업추진과정에서는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변창흠, 2004)

〈그림 2〉 투자결정과정과 사업추진과정상 타당성조사의 위상



출처 : 이세구·변창흠 (2003)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②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함
 - 이 경우 건축비(소요사업비 중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가 100억원 이상인 청사·시민회관·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함

Ⅲ. 중앙과 지방의 타당성조사 체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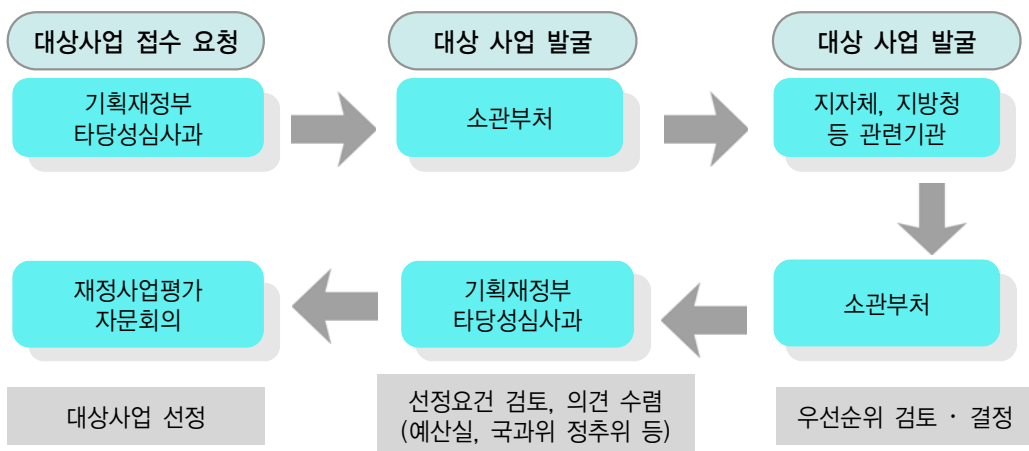
- 이 장에서는 1999년 이후 약 13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중앙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을 비교할 것임
- 중앙의 예비타당성조사 심사절차, 심사주체, 심사기준을 각각 비교하면서 그 시사점을 통해 지방타당성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 중앙과 지방의 타당성조사 절차

가. 중앙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 <그림 3>은 중앙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절차로서 각 부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한 사업들 중 실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과제를 선정하는 절차임
 - 즉, 기획재정부는 사업비 500억 이상이고 국비 300억 이상이 투입되는 각 부처, 지자체, 민간투자 사업들을 신청 받으면 바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 내 재정사업평가회의에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한 사업의 선정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됨

<그림 3> 중앙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절차



Ⅲ. 중앙과 지방의 타당성 조사 체계 비교

-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선정되면 비로서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재부는 일반 재정사업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R&D 사업은 KISTEP(한국과학기술평가연구원)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함
- KDI(KISTEP)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기재부에 통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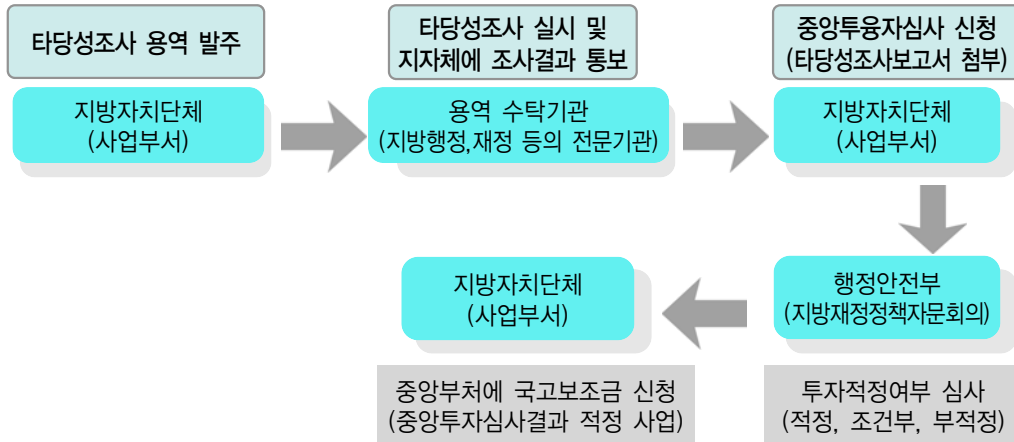
<그림 4> 중앙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방식



나. 지방의 타당성조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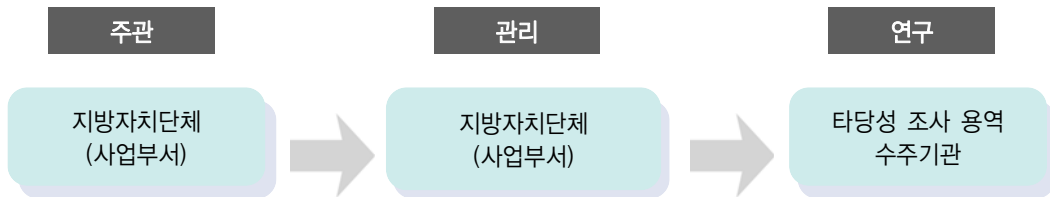
- <그림 5>는 지방의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결과 활용절차로서, 500억 이상 사업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신청시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먼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사업부서는 지방행정 또는 재정 등의 전문 기관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함
- 타당성조사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타당성 분석을 실시,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함
- 지자체 사업부서는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매년 3번(정기심사) 개최 되는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함
-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를 개최, 신청된 사업을 심사, 적정, 조건부, 부적정 등의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함
- 지자체는 심사결과 적정일 경우 해당 부처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함

〈그림 5〉 지방자치단체 500억 이상 사업의 심사 절차



- 지방의 타당성 조사 수행방식은 조사의 주관, 관리를 지자체 사업부서에서 담당하며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도 지자체에서 선정하여 위탁한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체계임

〈그림 6〉 지방의 타당성 조사 수행방식



2. 타당성조사 수행 주체 및 자원

가. 중앙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주체 및 자원

- 중앙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8조에 따라 모두 KDI와 KISTEP이 실시함
 - KDI(KISTEP)는 기재부에서 이미 한번 선정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연구기관, 대학, 민간엔 지니어링 회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함

Ⅲ. 중앙과 지방의 타당성 조사 체계 비교

- 이 때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나 모든 과제운영과 결과에 대해서는 KDI가 모두 책임짐

제28조(예비타당성조사 총괄기관) ①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총괄하여 수행한다. 다만, 순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총괄하여 수행한다.

○ 예비타당성조사 재원

-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재부의 국가사업비(100억원)로 운영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 기재부 공공정책국으로부터 매 건에 대해 수수료 형식으로 받고 있으며 이 수수료는 예타를 받으려는 부처에서 공공정책국에 납부한 것을 KDI에 주는 형식임

나. 지방의 타당성조사 수행 주체 및 재원

- 지방의 경우 중앙과 같은 성격의 타당성조사 연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 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서 실시함
 - 이 경우 건축비가 100억원 이상인 청사·시민회관·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³⁾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야 함
- 타당성조사 재원
 - 타당성조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 500억 이상 지방투자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 즉 지방은 해당 지자체가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의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보고서 검수 후 지자체 용역과제 재원에서 지불하는 형식임

3) ○ 전문기관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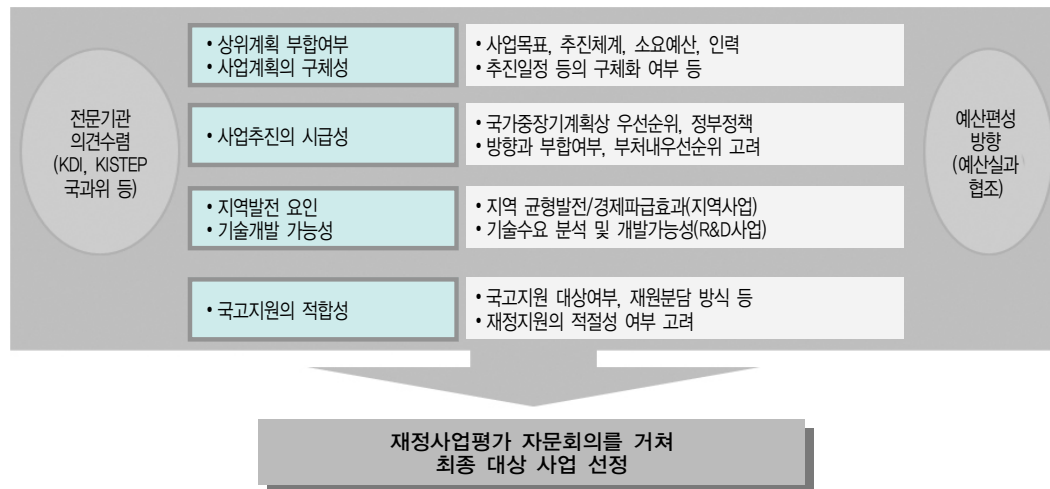
- 전문기관의 정관(학칙)의 목적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에 관한 연구업무와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업무를 규정하여야 함
- 타당성 조사 수행인력은 박사 2명, 석사급 5명 이상을 포함한 총 인원 15명 이상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국립대학교 연구소의 경우 수행인력은 총장이 승인한 연구기관으로서 총인원이 교수급 3명 이상과 박사급 2명 이상
- 기본재산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3. 타당성조사 평가기준

가. 중앙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기준

- 중앙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기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대상사업 선정단계에서의 평가기준과 실제 KDI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기준이 있음
- 기재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그림 7>과 같이 상위계획 부합여부, 사업추진의 시급성, 지역발전요인, 국고지원의 적합성과 전문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대상사업을 선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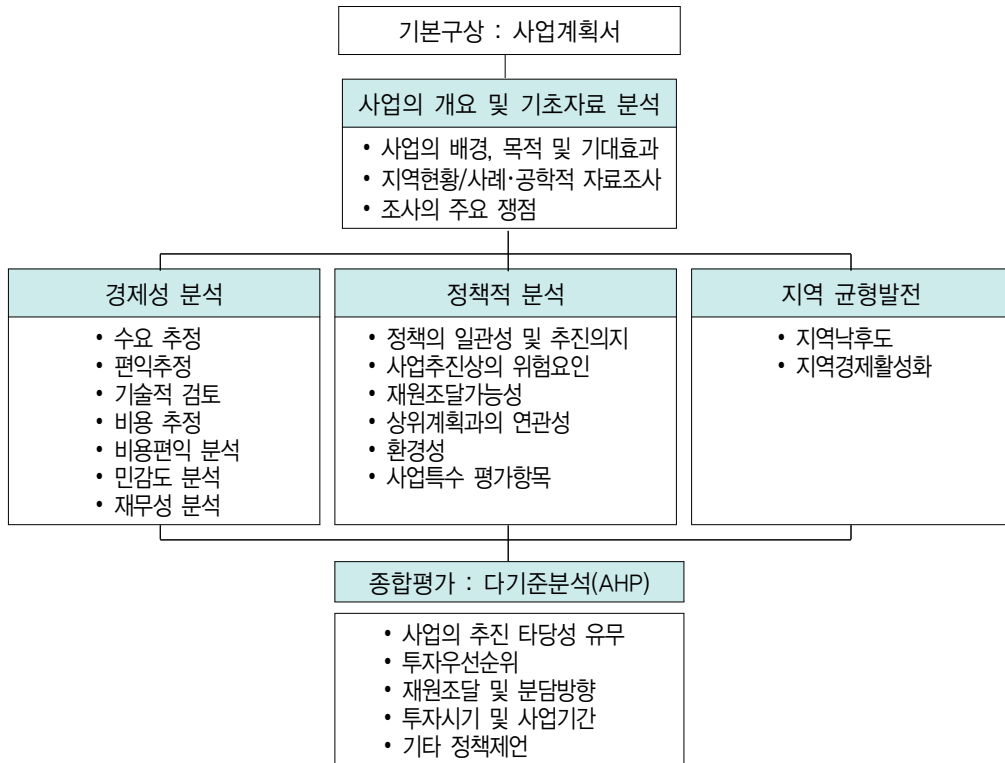
<그림 7>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준



-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KDI에 의뢰하면 KDI에서는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 지역균형발전 각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방법의 일종인 AHP(계층화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사업시행의 적절성을 계량화 된 수치로 도출함

Ⅲ. 중앙과 지방의 타당성 조사 체계 비교

〈그림 8〉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흐름



중앙의 예비타당성조사 AHP 지표 예(지역낙후도 지표)

- 인구증가율 : 최근 5년간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8.9%)
- 제조업종사자 비율 : (제조업종사자 수/인구)×100(13.1%)
- 도로율 : (법정도로연장/행정구역면적)×100(11.7%)
- 승용차등록대수 : (승용차 등록대수/인구)×100(12.4%)
- 인구당 의사수 : (의사 수/인구)×100(6.3%)
- 노령화 지수 : (65세 이상/0~14세 인구)×100(4.4%)
-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세입총계)×100 ; 최근 3년간 평균(29.1%)
- 도시적 토지이용 비율 : 지목상(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 / 행정구역 면적×100(14.2%)

중앙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점 참여자 및 항목별 가중치

- 내부수행과제 조사대상집단(총 8인)
- 참여연구진5인 (PM, 수요팀 2인, 비용팀 2인)/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관리부서 2인(소장, 실장)
- 외부 검토위원 1인
- 외부위탁과제 조사대상집단(총 8인)
- 참여연구진4인 (PM, 수요팀 1인, 비용팀 2인)/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관리부서 3인(소장, 실장, 팀장)
- 외부 검토위원 1인
- 8인의 평가자 결과 중 최고·최소 평가점수 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6인의 평가결과를 평균하여 취합
- AHP 항목별 가중치 범위

구 분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비 고
일반지침 (제4판)	40~60% (도로·철도부문)			2004년 하반기 및 2005년 상반기 착수사업
일반지침 수정	40~50%	25~35%	15~25%	06 예타 운용지침
현 행	건설	40~50%	25~35%	09 예타 운용지침
	R&D, 정보화	30~50%	기술성, 정책적 분석: 50~70%	
	기타 비투자 재정	25~50%	50~75%	

나. 지방투자사업 심사기준

- 지방투자사업의 심사기준은 <표 2>와 같이 국가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 능력,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주민숙원·수혜도 및 사업요구도,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종합적인 평가·분석 등 총 7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음
- 지방의 타당성조사 심사기준 및 지표 등은 연구용역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따라 상이함

<표 2>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체크리스트

평가 지표	비 고
1 사업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 사업인가? ■ 국가 또는 민간사업인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가 있는가?(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32조) 	*①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경우, ②국가사무일 때 구체적인 재정부담근거가 없는 경우, ③민간출연금 지급시 법령에 출연근거가 없는 경우 → 부적정 결정
2 사전절차 이행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책사업의 계획변경, 연도말에 긴급히 결정된 사업 및 국회 심의과정에 추가된 사업과 같이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인지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시 원칙적으로 재검토. 다만, 사정변경 등의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조건으로 검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조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조사 기관의 적정성(행안부장관이 고시한 전문기관 기준 준수여부) 	*미이행시 타당성재심사 조건으로 반려

Ⅲ. 중앙과 지방의 타당성 조사 체계 비교

평가 지표	비 고
③ 중앙기 계획과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장기계획 경제·사회 정책과의 부합성 또는 정부 역점시책 사업과 연계성 ■ 개별 법률에 의한 지역단위 계획과의 관련성 	*지역중합개발계획, 수도·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연안정비기본 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정부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 되어 있는 지 확인
④ 주민 수해도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편익이 전 주민에게 미치는 사업인가? ■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인가? ■ 지역내 또는 인근 지역에 동일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 시설용도 등이 기존시설(국가·지방·민간시설 등)과 중복되지 않는가? 	*"수혜주민수 / 전주민수" 로 계량화
⑤ 사업의 시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사업보다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가? ■ 반드시 올해(내년)에 착수해야 하는 사업인가? 	*상급기관 승인, 사업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 연 관사업 추진상황 등 고려
⑥ 사업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규모는 적절한 수준인가? ■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 산정이 적정한가? ■ 추가된 비용(연차별 재원부담액)이 자치단체 재정여건 범위 내 충당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 경제적 타당성(B/C)이 있는가? 또는 재무적 수익성이 있는가? 재무적 수익성이 있는 경우 민간자본 유치가능성 검토 ■ 기타 재원조달계획은 적정한가? ■ 기타시설 연계방안 및 프로그램 확충방안 등이 적정하게 마련 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또는 유사자치단체 수준과 비교 필요 *수혜인구, 유사조건의 사업과 비교 *예산액 대비 사업비비중, 가용재원 대비 사업비비중 고려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 *B/C 분석에서 비용이 과소산정되었는지, 편익이 과다산 정되었는 지 구체적인 내역 등 확인 필요 *(민간자본) 민간자본 협약서 등 구체적인 투자계획 등을 확인 * (국비지원) 사례가 있는 지 여부 및 정부 사업부처와 사전 협의 * (지방채)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인지 여부, 재원 중 지방채 포함시 신규지방채 발행여력으로 채무비율, 지방채 상환 능력 등 고려
⑦ 절차 및 정책적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위험성(환경파괴, 주민반대 등) ■ 법적인 제약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피시설의 경우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법령상 제약사항이 있는 경우 부적정 조치

자료: 2012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매뉴얼」

4. 타당성 조사 실적

가. 중앙의 예비타당성 조사실적

- 중앙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보면 KDI에서 타당성 조사 시행 첫 해인 1999년부터 2010년 까지 총 524건의 조사를 실시했음

- 최근에는 매년 약 70여건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총 524건 중 타당성 있다고 판정된 것은 건수 대비 61%, 사업비 대비 56%로써 전체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건수 중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가 타당한 사업이었음을 알 수 있음

〈표 3〉 중앙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건, 조원, %, '10년말 기준)

연도	조사대상		타당성 있음				중·장기적으로 검토			
	건수	사업비	건수	비율	사업비	비율	건수	비율	사업비	비율
1999	19	27,2	12	63	7,4	27	7	37	19,8	73
2000	30	14,0	15	50	6,1	44	15	50	7,9	56
2001	41	19,8	14	34	6,5	33	27	66	13,3	67
2002	30	16,2	13	43	6,2	38	17	57	10,0	62
2003	33	21,5	20	61	17,5	81	13	39	4,0	19
2004	55	18,6	41	76	13,3	72	14	25	5,3	28
2005	30	12,4	19	63	8,4	68	11	37	4,0	32
2006	52	21,5	28	54	9,3	43	24	46	12,2	57
2007	45	16,8	26	58	10,6	63	19	42	6,2	37
2008	43	11,9	28	65	5,4	45	15	35	6,5	55
2009	72	35,3	48	67	24,9	71	24	33	10,4	29
2010	74	31,7	58	78	23,0	73	16	22	8,7	27
계	524	246,7	322	61	138,2	56	202	39	108,5	44

나. 지방의 예비타당성 조사실적

- 지방에서 중앙투융자심사를 의뢰하는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수를 2006년부터 2010년 까지 살펴본 결과 매년 365건에서 적게는 254건 정도임
 - 이 중 타당성조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 사업수는 약 200건 정도임
- 평균 약 300건의 중앙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중 타당성 있다(조건부 통과 포함)고 판정된 사업 수는 2006년 86%, 2007년 92%, 2008년 87%, 2009년 85%, 2010년 82%로써 평균 86.4%로 나타남

〈표 4〉 연도별 300억원 이상 사업의 중앙심사 실적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총대상	301건	365건	317건	265건	254건
적정	105건(36%)	143건(39%)	141건(44%)	89건(34%)	97건(38%)
조건부	139건(46%)	195건(53%)	135건(43%)	136건(51%)	112건(44%)
부적정	57건(19%)	27건(8%)	41건(13%)	40건(15%)	45건(18%)

Ⅲ. 중앙과 지방의 타당성 조사 체계 비교

5. 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 근거법

가. 중앙의 예비타당성조사 근거법

- 중앙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시행령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등이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시행 전 사업의 투자가치, 투자의 효과, 사업의 위험성 등을 미리 진단해서 정부재원을 좀 더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음
 -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재정법시행령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①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함

나. 지방의 타당성조사 근거법

-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에는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내용 외에 타당성조사에 관한 구체적 법조항이 따로 있지 않음
 -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②항에 소요사업비 50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다. 지방투자사업과 관련한 최근의 법령개정 내용

- 2011. 8. 4자로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함을 지방재정법에 명시하였음
 - 지방재정법 제25조에 의하면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지방재정법 제26조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통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이는 중앙의 각 부처가 보조하는 국고보조사업일지라도 지방비가 부담되는 사업이라면 행정안전부의 책무가 있음을 법적으로 명확화 한 것이라 할 수 있음

IV.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의 문제점

- 본 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앙의 예비타당성조사와 비교결과,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함

1. 타당성조사 추진절차의 문제

- 중앙의 추진절차를 보면 사업 주무부처가 예비타당성조사 필요사업을 기재부에 의뢰하고, 기재부는 이들 사업의 타당성조사 실시여부를 내부적으로 한번 거친 후, 기재부가 직접 KDI에 의뢰하는 구조임
 - KDI는 의뢰받는 사업에 대해 일관된 기준과 지표, 외부 전문가들을 철저히 활용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주무부처가 아닌 기재부에 통보함
 - 기재부는 그 결과를 해당 주무부처에 통보함과 동시에 최종 예산편성 여부를 판단함
- 반면 지방의 경우 실제 사업 추진주체인 해당 지자체의 투융자 심사부서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연구용역을 위탁한 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보고서를 받게 됨
 -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도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독립적인 타당성조사 없이 지자체가 첨부한 보고서를 참고로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구조임
- 따라서 지방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중앙투자심사 신청 등 모든 절차에 지자체가 개입하여 사업자체에 대한 경제성이나 주민의 편의제고 목적이 아니라 지자체장의 공약사업, 선심성 사업 등을 단호하게 제어할 수 없는 구조임

2. 타당성조사 주체의 문제

- 중앙의 경우 사업추진부처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한 이후에는 사업추진여부가 결정되기 전

IV.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의 문제점

까지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시키고, 예비타당성조사도 KDI에서 전담하므로, 사업부처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음

- 반면, 지방의 경우 자체심사나 시·도심사의 경우 사업을 추진할 지자체의 투자심사부서에서 사전실무심사, 현지실사, 심사안건 배분, 지방투자심사위원회 소집, 심사결과 통보 등 모든 것을 관장함
 - 타당성조사 주체의 경우도 지방재정법시행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지방행정 또는 재정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을 KDI(KISTEP)로 명시, 독립되고 중립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의 경우 <표 5>과 같이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으로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단법인 연구기관이나 컨설팅 기관에서도 타당성조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음
- 따라서 다음 <표 6>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보듯이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의 경우 지자체가 용역비를 지불하는 용역발주 형태로 타당성조사가 수행됨으로 인해 조사결과 조작, 재차 타당성 조사 용역발주 등 신뢰성의 문제가 심각함

<표 5> 중앙과 지방의 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기관

중 앙	지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8조(예비타당성조사 총괄 기관) ①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총괄하여 수행함. 다만, 순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총괄하여 수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요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 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함. 이 경우 건축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용 또는 공공용 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함

<표 6> 2011년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점검 감사 결과 지적 사항

허위 용역결과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한 사례

“△△△시는 총사업비 263억원을 들여 식물원조성사업을 추진. 그런데 △△△시는 2005. 1. 18 연구용역 전문기관 이 아닌 조경업체로서 위 조성사업의 실시설계를 담당한 주식회사 ▲▲▲과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음. 주식회사 ▲▲▲는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시 외 주변지역의 시민 15%가 식물원을 방문하고 개장 첫해에만 유료 관람객이 23만명(월평균 1만 9천여 명)이며, 연간 6억 4,000여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거둘 것으로 추계하여 별도의 재정지원이 없이도 위 식물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를 제출하였고, △△△시 역시 용역결과에 대한 검토없이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2011. 5. 31까지 유료관람객은 월 평균 5,800명에 불과하고 입장료 수입은 주식회사 ▲▲▲가 전망한 수입액의 18.5%에 그치고 있으며, **식물원 개정이후 8개월간 누적적자가 9억여 원에 달하는 등 앞으로도 위 식물원 운영에 따른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지방자치단체의 타당성 없는 사업을 타당성 있는 것처럼 추진한 사례

“00구는 하프돔구장을 건립하는 등 문화체육 콤플렉스 사업을 추진. 00구는 2009년 7월 하프돔구장을 완전돔구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자체적으로 사업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완전돔구장의 경제적 타당성은 0.93으로 1이 되지 않자 전문용역기관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 이에 2009. 8. 4부터 9. 3까지 주식회사 ●●●연구원에 ‘돔구장 건립에 따른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경제적 타당성(B/C 비율)은 1.41 및 1.79라는 용역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완전돔구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음. 그런데 **감사원에서 ●●●연구원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와 검토결과 운용수익 등이 과다계상되어 실질적 경제적 타당성은 0.66에서 0.93으로 나타났음**”

출처: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2011

3. 타당성조사 심사기준의 문제

- 중앙의 경우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인해 심사기준의 표준화가 가능하고 교통, 복지, 건설 등 상당히 세분화되고 특화된 지표적용이 가능하나 하나의 분야 내에서는 일관된 조사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계량화 되어 있음
 - 특히 지정된 전문기관이므로 인해 조사방법 및 기준, 지표연구를 꾸준히 함으로써 지속적인 조사연구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함
- 지방의 경우 앞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체 투자심사시 사용되는 투융자 심사기준이 대체로 정성적이고, 타당성조사의 경우도 의뢰하는 기관이 저마다 달라 표준적이고 일관된 타당성조사가 불가능하고 지방의 특성이 고려된 조사방법의 지속적인 연구와 업그레이드가 힘든 구조임

4. 타당성조사 근거법의 문제

- 국가의 경우 사업비 500억 이상의 사업은 시행 전에 그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법적인 토대가 공고함
- 반면 지방의 경우 투융자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 외에 500억 이상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함

V. 정책제언

- 그나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3조에 2008. 10까지 있었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도 타 조항(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에 통합되어 실질적으로는 더 잘 운영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규모가 큰 중앙투자사업심사에 관한 독립된 법조항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임

5. 투자심사 결과의 문제

- 중앙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한 사업은 사업비 대비 56%, 사업건수 기준 평균 61%인 반면 지방의 경우 사업건수 기준 약 86%로 나타났음
 - 중앙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KDI(KISTEP)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여부가 결정됨
- 지방의 경우 국고보조금 우선 확보를 위한 무리한 사업계획 수립, 지방비 부담,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문제가 심각함을 감안한다면 사업비 500억 이상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하겠음

V. 정책제언

1. 타당성 조사의 독립성, 중립성 유지

- III장에서 중앙의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절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의 경우 각 부처가 계획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이후에는 진행과정 중에 사업 부처가 관여할 여지는 전혀 없음
 -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신뢰성 있는 조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체계임
- 따라서 지방의 경우도 타당성 조사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지자체와 조사기관을 명확히 분리하는 방안이 필요함

2. 타당성 조사기관의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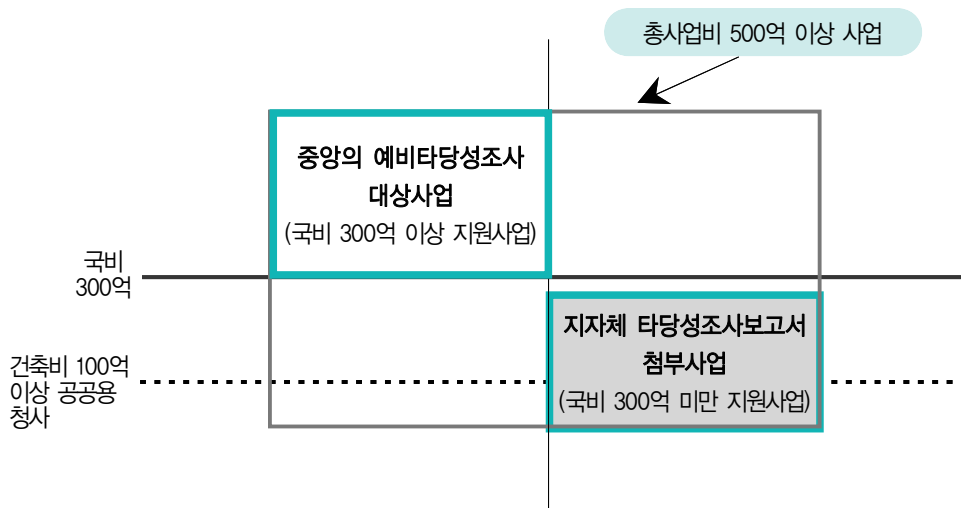
-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고 국비 300억 이상임. 따라서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고 국비 300억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각각의 지자체가 용역발주 방식의 타당성조사 수행형태이므로 사실상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지속적인 타당성조사방법 개발을 위한 연구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

- 따라서 표준적이고 일관된 타당성조사, 조사방법의 지속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처럼 타당성 조사기관을 한 곳 또는 최대 두 곳으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이 필요함

〈표 7〉 중앙과 지방의 사업 추진 이전 타당성조사 비교

중 앙	지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 제외사업: 지자체 시행사업 및 민자유치사업 중 국고 지원 300억원 미만 사업 ○ 대상사업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 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 ○ 타당성조사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한국과학기술수평기원(KISTEP): 순수 국가연구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500억원이 넘는 사업(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은 300억원 이상) - 건축비(소요사업비 중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 제외)가 100억원 이상인 청사·시민회관·구민회관 등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 ○ 타당성조사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건축비(소요사업비 중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제외)가 100억원 이상인 청사·시민회관·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

〈그림 9〉 중앙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지방의 타당성조사결과보고서 첨부사업



V. 정책제언

3. 지방재정정책 자문회의의 지원 강화

-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하고 있는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가 여러 분야의 위원회가 통합된 만큼 투자심사 분야를 더욱 세분화 하고 분야별 위원들의 최대 역량 발휘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사실 중앙처럼 별도의 법적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단기적으로 쉽지 않다면 현재의 조직을 적극적으로 전문화시키고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나 장기적으로는 중앙과 같이 타당성조사를 명시한 법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문헌〉

-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2011.
- 김강수,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 KDI, 2012.
- 변창흠·송우경, “서울시 투·융자심사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책토론회 발표논문집, 2001.
- 서정섭·이창균, “지방사업 예비타당성제도의 운영실태와 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부자료, 2005.
- 윤영진, “지방정부 재정투융자 심사의 실태와 과제”, 2002년도 정책분석평가사협회 정책세미나 논문집, 2002.
- 이준구, 재정학, 다산사, 2007.
- 이창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기법 개발, 2003.
- 이 효,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의 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 조기현, “지방투자사업 관리제도 실태와 쟁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워크샵 발표논문, 2012.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법, 2012.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2012.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매뉴얼, 2011.
- Millar, Annie, “Selecting Capital Investment Project for Local Government”, *Public Budgeting and Finance*, Autumn, 1998.
- Nas, Tefvik F, *Cost-Benefit Analysis*, Sage Publication, 1996.

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인재개발 교육프로그램 안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제도 발전 및 정책대안에 대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연구성과가 지방정책 수립과 적용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인재개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시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의정연수센터

운영방법

- 대 상 : 광역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 방 법 ① 방문교육 :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대상자와 교육장소, 시기를 정하고 지방자치·의정연수센터 교수진이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
- ② 집합교육 : 교육 신청하여 연구원에 방문하셔서 실시하는 교육

교육과정

- 방문교육

개 요	세 부 내 용		
기간	1일~2일		
교육 과정	지방재정력 분야	지방재정관리 혁신	고령화사회와 지방재정 운영전략
			성과중심 예산제도 운용 및 활용방안
			지방재정 위기와 대응방안
			광특회계 운영과 지방의 대응
	지방경쟁력 분야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공공감사체계의 이해
			지방자치단체 내부통제 및 자체감사
			컴퓨터활용 감사기법
			감사계획 수립방법 및 감사기법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성과관리 개요와 자체평가의 이해
			성과평가 지표개발의 원칙 및 방법
			지표개발 실습
			지표별 가중치 설정과 평가기법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제고	성과창출형 지방정부 시스템의 이해		
	지방정부의 생산성 제고		
	지방정부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역량		
지역경제발전 분야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운영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이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설립과 육성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운영과 지속방안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발전	지역발전의 현재 및 미래환경의 이해	
		광특회계 및 국고보조금 지역개발 자원	
		창조 지역발전의 이해, 연계 협력 및 광역화 미래 특화발전 전략	
교수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진, 대학교수 및 중앙·지방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교육비	1일과정 : 1인당 10만원 / 2일과정 : 1인당 15만원		

○ 집합교육

개 요	세 부 내 용		
기간	3일		
교육 과정	사업예산과 복식부회계	1일차	지방재정의 현황과 과제
			사업예산제도 : 사업예산 운용요령·성과예산 편성방법, 성과관리
		2일차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도입과 과제
			복식부회계제도 : 발생주의 이해, 재무제표, 복식부기 재무정보 활용
		3일차	주민참여예산제도와 편성방법
			재정분석과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광역발전특별회계의 운영과 지방의 대응 최근 지방재정 변화 동향		
	주민자치센터	1일차	주민자치의 이념과 철학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활성화방법·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주민자치위원의 바람직한 역할
		2일차	마을행사의 기획과 운영·우수사례 소개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3일차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사례 소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도입과 활용방안		
	기후변화와 녹색공동체	1일차	기후변화가 주는 파급효과 : 자원고갈과 에너지
			기후변화와 생존위기 : 대응과 재난안전
			녹색성장의 내용과 정책방향
		2일차	탄소배출 저감사례와 적용방안 : 교통 및 도시계획
			지역에너지 자립사례와 적용방안 : 주거 및 산업
			지역녹색성장 및 에너지 실천계획
		3일차	대안모색 I : 생활 속의 녹색성장 실천사례와 적용방안
대안모색 II : 지역녹색공동체 형성 방안			
지역녹색성장·에너지 기본구상			
지역공공디자인	1일차	지역공공디자인의 이해	
		지역공공디자인 활성화 방안	
		커뮤니티 디자인수법 적용 방안	
	2일차	우수 지역공공디자인 사례 견학	
	3일차	국내·해외 우수사례 소개(공공시설물 디자인, 옥외광고물 정비방안)	
		지역공공디자인 개선방안	
교수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진, 대학교수 및 중앙·지방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교육비	3일과정 : 1인당 19만원 (※ 주민자치위원 2일과정 : 1인당 15만원)		

※ 교육이수 실적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0조 제항 및 공무원교육훈련평정규칙(행정안전부령 제277호)에 따라 '상시학습 수료'로